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834 발의연월일: 2021. 2. 1.

발 의 자:박 진·강대식·강민국

강훈식 • 권명호 • 권영세

김기현 · 김예지 · 김영식

김 웅・김은혜・김주영

노웅래 • 박성중 • 박수영

배준영 · 배현진 · 변재일

성일종 · 송석준 · 신원식

양금희 • 유경준 • 이광재

이 영 · 이헌승 · 조용천

정성호 · 정운천 · 정일영

전주혜 • 조태용 • 지성호

태영호 • 황보승희 • 하영제

의원(3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, 공작물의 설치,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면서, 행위제한의 예외로서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등산로, 산책로, 소규모 실내 체육시설, 휴양림, 자연공원, 도시공원 등의 시설은 시장

· 군수 ·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이와 관련하여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, 반려동물의 운동·휴식시설도 자연공원, 도시공원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의 보전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, 행위제한의 예외 시설에 "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운동·휴식시설"을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제1항제1호).

법률 제 호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제1호가목 중 "생활체육시설"을 "생활체육시설,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운동·휴식시설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	제12조(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
제한)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	제한) ①
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, 공	
작물의 설치, 토지의 형질변경,	
죽목(竹木)의 벌채, 토지의 분	
할,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	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	
법률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	
시・군계획사업(이하 "도시・	
군계획사업"이라 한다)의 시행	
을 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	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	
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	
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	
수 또는 구청장(이하 "시장·	
군수·구청장"이라 한다)의 허	
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	
다.	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	1
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	
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
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	
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	

의 형질변경

가. 공원, 녹지, 실외체육시설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

나. ~ 마. (생 략) 1의2. ~ 9. (생 략) ② ~ ① (생 략)

가
<u>생활체</u>
육시설, 반려동물을 동반할
<u>수 있는 운동·휴식시설</u>
-
나. ~ 마. (현행과 같음)

나. ~ 마. (현행과 같음) 1의2. ~ 9. (현행과 같음) ② ~ ① (현행과 같음)